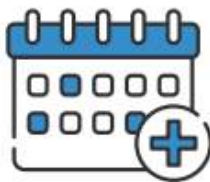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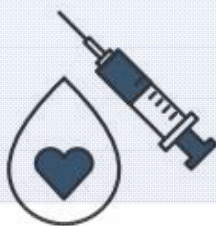




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



운영규정

목차

- 제 1 장 목적 및 운영이념
- 제 2 장 사 업
- 제 3 장 이용자 모집 방법
-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-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- 제 8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제 9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
- 제 10 장 요양보호사
- 제 11 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 관리
- 제 12 장 보수에 관한 사항
- 제 13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- 제 14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
- 제 15 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- 제 16 장 직원회의
- 제 17 장 운영위원회
- 제 18 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
- 제 19 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

제 1 장 목적 및 운영이념

제1조 (목적 및 운영이념)

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노인복지센터(이하 "센터"라 칭한다)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. 또한,케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노후를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섬겨 모심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장 사 업

제1조 (사업목적)
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,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2조 (사업내용)

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.

- ①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한다.
- ③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,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.

제 3 장 이용자 모집 방법

제1조 (이용 대상자)
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2조 (이용자 모집 방법)

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.

- ①지역사회내 유관기관,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
- ②지역사회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(안)
- ③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
- ④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 홍보(안)
- ⑤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, 키워드 검색광고 등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제공내용 홍보활동

제3조 (구비서류)

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
- ②장기요양급여 기록지

제4조 (사례관리)

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.

- ①이용의뢰자 신청시,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, 구두,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.
- ②대상자의 문제규명, 제공서비스, 개업계획, 목표를 설정한다.
(이용자 계획서, 상담 기록지)
- ④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.(서비스기록표, 사례평가서)
- ⑤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,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, 구두,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,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.